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27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주민 지원대책 수립 대상 공공주택사업의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대책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내용 등(안 제21조의2 신설)

- 1)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민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지원대책 중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은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지사 등은 주민지원대책으로서 전업(轉業) 희망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및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요건 강화(안 제24조제5항제4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당시 국토교통부 또는 공공주택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과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람’ 등을 제외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1. ~ 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2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공
공주택사업: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2. 제2항제4호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 주
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② 법 제27조의3에 따른 지원대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3.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택지구 안의 주민
의 고용 추천
4.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
업의 지원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전환훈련의 대상·방법 및 수당의 지급기준 등 직업전환훈련의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장(移葬),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支障物) 철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제2항제4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제4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우선”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거나 우선”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다른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같은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거나 수행 중인 사람

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다.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2(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2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말한다.</u> <u>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u> <u>2. 제2항제4호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 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u> <u>② 법 제27조의3에 따른 지원대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전환훈련의 실시</u> <u>2.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u> <u>3.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u>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략)

공업체 등에 대한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

4.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전환훈련의 대상·방법 및 수당의 지급기준 등 직업전환훈련의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장(移葬),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支障物) 철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제2항제4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

⑤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신 설>

<신 설>

5. ~ 18. (생 략)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 주택지구 내 토지의 소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같은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거나 수행 중인 사람

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다.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람

5. ~ 18. (현행과 같음)

⑥ -----

-----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거나 우선 -----

-----.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4441